

<p>소득세 등의 부과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li>·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li>· 법인세에서 농지세를 공제하는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농업소득세에서는 관련규정 삭제</li> </ul>
--------------------	--	---

## 10. 지방세감면규정 전면 재조정

### 1) 배 경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12.31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sup>20)</sup>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축소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이를 축소조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5장 감면규정의 각 조문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이동 조정하였다.

이번 지방세 감면규정의 조정은

농어민·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여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지원하고,

고유업무에 대한 감면을 법령상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등 포괄적 감면대상을 특정화 또는 개별화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며, 목적세(사업소세)는 최대한 과세전환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도 최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지방행정 서비스에 최소한의 비용부담((minimum tax)을 실현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경감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주재정 책임(fiscal

20) '99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규모는 2조 1,17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18조 5,861억원의 11.4%에 이르며,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130종, 10,392억원(49.1%)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78종, 8,191억원(38.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27종, 2,587억원(12.2%)이다.